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9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구미시강동문화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위탁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강동문화복지회관 ‘사용자의 책임’ 조항 일부 개정(안 제17조제2항)
- 나. 강동문화복지회관 ‘위탁 운영’ 조항 신설(안 제20조)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문화예술진흥법」
- 나. 예산관련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다.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과와 합의되었음
- 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강동문화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의 제목 “(사용자의 책임)”을 “(손해배상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용자가”를 “사용자 및 이용자(기타이용자포함)가”로, “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”을 “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을”로 한다.

제20조를 제21조로 하고,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0조(위탁 운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아래 사항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다.

1.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2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
3.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7조(사용자의 책임) ① (생 략) ② <u>사용자가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, 망실한 경우에는 사용자로 하여금 손해를 즉시 배상하도록 하여야 한다.</u> <u><신 설></u> <u>제20조 (생 략)</u>	제17조(손해배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사용자 및 이용자(기타이용자포함)가 --- 경우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 따라 손해배상을 --.</u> <u>제20조(위탁 운영)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동문화복지회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, 아래 사항에 대해 민간 위탁할 수 있다.</u> <u>1.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2.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3. 기타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4. 그 밖에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</u> <u>제21조 (현행 제20조와 같음)</u>

관계법령

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5조(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)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.

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소관 실 · 과		문화예술회관
입 안 자	관 장	최 현 도
	담 당	한 재 환
	담 당 자	허 수 경 (480-4553)